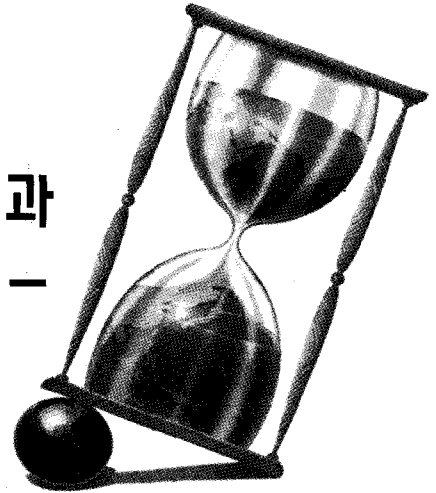


# 국가기술자격제도 전면개편과 각 규칙의 개정령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란 국가가 일정한 기술교육훈련의 수료정도나 기술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능 등을 측정하여 그 업무수행 능력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계와 기능계 및 서비스계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계는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으로, 기능계는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보로 구성되고, 서비스계는 1급, 2급, 3급의 등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24개 분야에 걸쳐 기술계·기능계 708개 종목이 있고, 서비스계(주산, 부기, 워드프로세서) 등 29종목을 포함하면 총 737종목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 시행한 이래 국가기술자격합격자는 1천7백만여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97년 한해동안 3,495,773명이 응시하여 1,035,774명이 합격하였다. <표 1>

이러한 국가기술자격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은 기능계와 기술계로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고, 등급, 종목수도 지나치게 다기화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학력수준이 크게 높아져서 거의 대부분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직 근

로자에게 차별적 의미를 탈피하게 하고 기능인→기술인로의 과정을 연속과정으로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중간기술인력의 경우 최근의 생산기술이 일정수준의 숙련(Skill) 요건에 추가하여 관련기술(Technology)에 대한 지식까지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어 실무경력요건의 강화와 아울러 기술계와 기능계를 통합한 기술자격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유사종목 및 인력수요가 없는 종목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해당 기술자격의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박기계기사 1급, 2급은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이 일반기계기사 1급, 2급과 유사하고, 기술발전이 수공에서 자동화되어감에 따라 기능사보(108종목)가 수행하는 직무는 대부분 기계로 대체되는 실정이다.

셋째, 기술자격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자격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인터넷과 같이 기술변화가 빠른 직종은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이를 관리하

[표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 현황 (97년말 현재) (단위:명)

구분	합계	기술계	기능계	서비스계
총누계	17,258,917	1,016,016	4,324,962	11,917,939
1997년	1,035,774	89,544	364,105	600,125

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넷째, 학력위주의 응시자격 설정은 노동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능력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경력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7년도 기사1급 응시자중 4년제 대학졸업자가 79%를 차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실무경력자는 3% 정도로 낮은 실정이다.

다섯째, 점정방법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격자를 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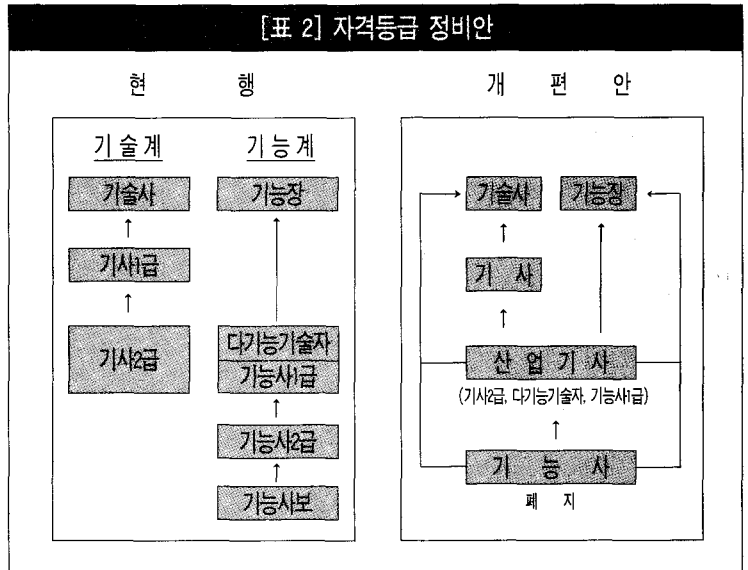
우선 실기점정의 경우 필답형 종목이 108개 종목(97년도 현재)으로 전체기술·기능종목(708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론보다는 실기능력이 중요한 기능사 2급의 경우에 현장근로자는 기능이 탁월함에도 필기시험 합격의 어려움이 있었다.

여섯째, 보수교육이 국가기술자격법과 개별사업법에서 2중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자격취득자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3월 27일 자격기본법 제정 및 국가 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기술자격법상의 기술계·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구분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지난 98. 4. 28. 국가기

[표 2] 자격등급 정비안



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편이 마무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자격등급 단순화

산업현장의 중간기술자는 숙련기능 뿐만 아니라

[표 3] 응시자격 정비안

등급	현행	개선안
기술사	기사2급+5년 실무경력 기사2급+7년 실무경력 <신설> 실무경력 14년	기사+4년 실무경력 산업기사+6년 실무경력 기능사+8년 실무경력 실무경력 11년
기능장	다기능기술자, 기능사2급+7년 실무경력 기능사2급+9년 실무경력 실무경력 14년	산업기사+6년 실무경력 기능사+8년 실무경력 실무경력 11년
기사	기사2급+실무경력 2년 <신설> 실무경력 7년이상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기능사+3년 실무경력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기능사 2급+2년 실무경력 실무경력 5년	기능사+1년 실무경력 실무경력 2년 경력

\* 학력요건은 현행대로 존치

관련 지식까지 요구하고 있어 중간등급을 통합하여 산업기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8등급(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장,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2급, 기능사보)을 5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으로 단순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사1급은 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등급은 산업기사로 통합되고 기능수준이 낮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없는 기능사보(108개 종목)는 폐지후 경과조치를 두어 2001. 12. 31까지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술사 및 기능장은 현행과 같다. <표 2>

■ 통합·신설·폐지 등 자격종목 조정

직무내용이 유사한 38개 종목을 18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4개 종목을 20개 종목으로 세분화하며 22개 종목을 신설, 2개 종목을 폐지하는 등 기술자격종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737개 종목이 595개 종목으로 조정됐다.

■ 경력중심사 유리토록 응시자격 개선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의 비중을 조정하여 학력보다는 자격소지자 또는 현장 근로자들이 기술자격검정 응시에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상위등급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기술사까지 응시하는데 있어서 9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6년이면 기술사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대학졸업후 7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하는 대졸자보다도 기술사를 취득하는데 유리하게 됐다.

또한 학력이 없는 실무경력자들도 현재 기술사에 응시하려면 14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11년으로 단축했다. <표 3>

■ 합격예정제 도입

합격예정제를 도입해 부족한 기술자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저히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 합격예정 인원을 예정·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건설분야의 기술사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기술자격자 공급이 해소될 전망이다. 동제도의 시행은 주무부처의 정확한 수요조사 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한시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 검정운영제도 개선

현재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나 면접시험에 떨어질 경우 「차기 2회」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과 외국자격과의 상호인정제도를 통해 우리기술 자격자가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국자격취득자에 대한 검정면제를 개선했고 기능사종목 중 이론보다는 실기능력이 중요한 조적, 미장, 타일 등의 기술자격은 필기시험을 폐지해 실기능력이 뛰어난 현장근로자의 자격취득이 늘어나도록 했다.

■ 민간기술자격 활성화

기초적이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고 인력개발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인력 자격검정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담당하고 시장성이 높고 다양하며 매우 가변적인 기술분야의 자격검정은 민간검정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수준이상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제도를 통해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민간자격을 활성화했다.

■ 보수교육절차 간소화

개별법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없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술자격등급의 개편을 통해 변화된 산업현장의 실무능력 우수자가 학력자에 비해 손색없이 실력에 따라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기술자로 우대받게 되어 기술·기능구분에 따른 산업현장의 뿌리깊은 기능천시 풍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령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

제14조·제16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에 대한 교육)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기관의 소속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및 에너지관리분야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7일 이내로 하고, 그 교육과목·과목별시간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3의 보고서란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6호·제2항, 제9조제1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5조, 별표3,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열사용기자재** 개정령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48조 제1항'을 '법 제48조'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로 한다.

제18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시공기록 및 배관도면을 작성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시공업자가 설치·시공하는 것

제26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호·제2항 제2호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2조의2서식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1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기획 ②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제26조 관련)						
구분	내 용	해당법조문	과 태 료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1. 에너지 사용계획협의	가.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8조제1항	50	100	200	300
	나.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9조제1항	50	100	200	300
	다.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9조제2항	50	100	200	300
	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요청받은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10조	50	100	200	300
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가. 수요관리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에너지공급자	법 제12조제1항	50	100	200	300
3.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사업주관자외의 자의 사용계획 신고 ·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신고 등 ·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등 · 검사대상기기조정자의 선임	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1조제1항	50	100	200	300
	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측정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등급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등급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법 제19조제2항	50	100	200	300
	다. 에너지사용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제25조제1항	20	50	100	300
	라. 검사대상기기조정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검사대상 기기설치자	법 제59조제3항	30	70	150	30
4. 개선명령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항	50	100	200	300
5.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2항	30	50	100	300
6. 자체검사 등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경우의 자체검사기록 및 검사대상기기의 운전·보수 등에 관한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	20	50	100	300
7. 검사대상기기조정자의 의무 등	가. 검사대상기기조정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1항	20	50	100	300
	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검사대상기기조정자의 의견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				
8. 유사명칭의 상용금지	가.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67조	300			
	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	300			
9. 교육	시공업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시공업의 기술인력·검사대상기기조정자로 하여금 통상산업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8조제2항	20	50	100	300

\* (주) 이 표에서의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의 누계치로 한다.

[별표 14]

수수료 (제53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구 분	용 량	수 수 료 (원)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및 온수보일러의 검사신청서	0.5t/H 미만	24,100
	0.5t/H 이상	35,000
	1t/H 이상	46,500
	1.5t/H 이상	59,800
	2t/H 이상	73,700
	2.5t/H 이상	76,700
	3t/H 이상	81,600
	3.5t/H 이상	84,600
	4t/H 이상	85,800
	4.5t/H 이상	87,600
	5t/H 이상	88,100
	6t/H 이상	90,000
	7t/H 이상	91,300
	8t/H 이상	92,400
	10t/H 이상	97,900
15t/H 이상	105,100	
20t/H 이상	111,100	
30t/H 이상	125,500	
40t/H 이상	140,300	
60t/H 이상	141,400	
80t/H 이상	141,900	
100t/H 이상	142,500	
압력용기의 검사신청	0.5m <sup>3</sup> 미만	19,300
	0.5m <sup>3</sup> 이상 1m <sup>3</sup> 미만	19,900
	1m <sup>3</sup> 이상 5m <sup>3</sup> 미만	23,500
	5m <sup>3</sup> 이상 10m <sup>3</sup> 미만	27,700
	10m <sup>3</sup> 이상	33,500
		(50m <sup>3</sup> 마다 5,800원 가산)
철금속가열로의 검사신청	50만kcal/h 초과	36,200
	100만kcal/h 초과	41,000
	500만kcal/h 초과	44,700
	1000만kcal/h 초과	48,300

\* 비고 : 보일러의 용량 산정에 있어서 60만kcal/h를 1t/h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중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등록제와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에너지의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어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에너지효율기준기자재로 정하고, 동 기자재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제조업자나 소유자에게 최저기준에 적합하도록 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에너지효율기준기자재의 범위에 현재 자동차 중에는 승용차만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함(제8조).

나. 대규모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위탁을 받아 당해 기관의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자의 소속기술요원에 대한 교육기관에 에너지관리공단 외에 에너지분야의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피교육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함(제22조).